

(사)한국건축역사학회 문화유산보존기술논문상 시상 규정

제정 2019. 9. 21

개정 2025. 3. 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국가유산수리기술자협회(이하 협회)의 선의를 따라, 문화유산보존기술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에게 수여하기로 한 ‘문화유산보존기술논문상’(이하 기술논문상)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상 대상)

기술논문상은 한국건축역사학회(이하 학회)의 논문집인 <건축역사연구> 및 춘·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저자 가운데, 문화유산보존기술 분야의 학문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되는 정회원, 혹은 예외적으로 그 외 문화유산보존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실전적 성과를 거둔 기술인이나 기관에게 시상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

- ①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학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논문편집위원장, 학술이사와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 기술 관련 분야의 전공자나 전문가를 포괄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4조 (심사 및 시상 절차와 방법)

- ① 후보자는 전년도 10월호 논문집부터 당해년도 8월호까지의 학회 논문집(건축역사연구)에 발표된 학술논문, 그리고 전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당해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의 저자(공저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각자 2편 내외의 1차 후보논문을 선발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후보논문 가운데 최우수논문 1편의 연구자를 수상후보자로 선정한다. 만약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문화유산보존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실전적 성과를 거둔 기술인이나 기관을 추천하여 재논의할 수 있다. 단,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년도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심사과정을 기록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상후보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수상자로 확정된다.
- ⑤ 시상은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 개최 공고 시 수상자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⑥ 수상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한다.

제5조 (재원)

기술논문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술논문상의 재원은 (사)국가유산수리기술자협회에서 매년 출연하는 기금으로 운영한다.
- ② 매년 협회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년도 기술논문상의 부상으로 수여되는 상금과 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하며, 협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출연 기금 및 상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기술논문상 기금 및 재원의 운용 및 관리는 한국건축역사학회가 담당한다.

<부칙>

- ① 시상은 2019년도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결정에 따른다.